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

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

전문공보관 검사 전안문
전화 061-863-4302 / 팩스 061-860-4399

보 도 자 료
2022. 3. 14.(월)

제 목 **전남 장흥 5세 조카 아동학대치사 사건 고모 구속 기소**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제11조 제1항)

☑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(제11조 제2항 제3호,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)

☑ 예외적 실명 공개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(제12조 제1항)

※ 2022. 3. 14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- 금일(3. 14.)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(지청장 임선화)은 동거하며 사실상 양육 중인 조카(5세 아이)를 철제 청소도구 막대로 수회 때려 같은 날 사망에 이르게 한 고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하였음
-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

Ⅰ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○ **피고인 :** A○○(40세, 피해아동의 고모)

○ **피해자 :** B○○(5세)

○ **공소사실 요지**

- '22. 2. 14. 10:30경 피해자를 유리창닦이(철제, 길이 약 30cm)로 온몸을 수회 때려 같은 날 18:22경 사망에 이르게 함**[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]**

- '21. 11. 1.경 및 '21. 12. 10.경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**[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]**

Ⅱ 주요 수사경과

○ ’22. 2. 17. 피고인 A○○ 구속

○ ’22. 2. 23. 전남경찰청, 사건 송치

○ ’22. 3. 14. 피고인 A○○ 구속 기소

Ⅲ 참고사항

○ 피해자 피하출혈 상흔 부위 분석 및 의료자문 의뢰 등 면밀히 수사한 결과,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폭행·학대하여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,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죄 등으로 구속기소 하였음

○ 피고인 A○○의 휴대전화에서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토대로 피해자 사망일 이전에도 피해자를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지하였음

○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하여 관내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,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, 향후에도 아동학대사건 발생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수사 및 아동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핫라인을 강화하였음

Ⅳ 향후 계획

○ 검찰은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,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

○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아동들에 대해서도 추가적 아동학대 범죄 예방 및 실질적 지원·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 관찰 및 필요한 지원 예정임▨